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 번호	1976
----------	------

발의년월일 : 2010. 7. 9.

발 의 자 : 김동규 의원 외 9인

개정이유

- 안산시의회 제6대 의원 정수가 22명에서 21명으로 1명 줄어들에 따라서 상임위원의 위원수를 조정하여야 하는 필요성이 있어 관련 조문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기 위함.

주요골자

- 의회운영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경제사회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의 각 상임위원의 정수를 7명에서 7명이내로 정비함(안 제2조의2).

개정조례안 : 별첨

관계법령발췌서 :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없음

예산수반사항 : 해당없음

사전예고(결과) : 해당없음

기타 참고사항 : 해당없음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의2(상임위원회의 설치) 의회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정수는 다음과 같다.

1. 의회운영위원회 7명 이내
2. 기획행정위원회 7명 이내
3. 경제사회위원회 7명 이내
4. 도시건설위원회 7명 이내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의2(상임위원회의 설치) 의회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정수는 다음과 같다.</p> <p>1. 의회운영위원회 7명</p> <p>2. 기획행정위원회 7명</p> <p>3. 경제사회위원회 7명</p> <p>4. 도시건설위원회 7명</p>	<p>제2조의2(상임위원회의 설치)</p> <p>.....</p> <p>....</p> <p>1. 의회운영위원회 7명 이내</p> <p>2. 기획행정위원회 7명 이내</p> <p>3. 경제사회위원회 7명 이내</p> <p>4. 도시건설위원회 7명 이내</p>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1991.04.04 조례 제0401호
개정 1992.03.18 조례 제0440호
개정 1995.01.17 조례 제0577호
개정 1995.07.13 조례 제0638호
개정 1995.10.31 조례 제0654호
개정 1996.12.06 조례 제0719호
개정 1998.06.29 조례 제0793호
개정 1998.10.12 조례 제0803호
개정 2000.04.04 조례 제0910호
개정 2000.12.01 조례 제0947호
개정 2001.11.29 조례 제0995호
개정 2002.10.31 조례 제1041호
개정 2003.06.18 조례 제1076호
개정 2004.01.12 조례 제1110호
개정 2004.10.20 조례 제1153호
(일부개정) 2005.05.26 조례 제1196호
(일부개정) 2006.03.10 조례 제1249호
(일부개정) 2006.09.28 조례 제1274호
(일부개정) 2007.01.01 조례 제1291호
(일부개정) 2008.04.11 조례 제1386호
(일부개정) 2009.03.27 조례 제1462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산시의회(이하"의회"라 한다)교섭단체 및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4.11>

제2조(교섭단체의 구성) ① 의회에 5인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그러나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5인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②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은 그 단체의 소속의원이 연서·날인한 명부와 대표의원의 직인 및 사인의 인영을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소속의원의 이동이 있거나 소속정당의 변경이 있

을 때에는 당해 의원이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보고할 수 있다.

③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이 당적을 취득하거나 소속정당을 변경한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2008.04.11〉

제2조의2(상임위원회의 설치) 의회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정수는 다음과 같다. 〈개정2008.04.11〉

1. 의회운영위원회 7명
2. 기획행정위원회 7명
3. 경제사회위원회 7명
4. 도시건설위원회 7명

제3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①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심사 등을 처리하는 직무를 행한다.

②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 〈개정2008.04.11〉

1. 의회운영위원회

가.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나. 의회사무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의회관련 조례 및 규칙·기타 의회관련 각종 의안에 관한 사항

2. 기획행정위원회

가.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민원즉심관실, 행정지원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개정 2009.03.27〉

나. 창조경제국(기획예산과, 투자경영과, 문화관광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정보문화사업소, 외국인주민센터 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 구청(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

3. 경제사회위원회

가. 창조경제국(경제정책과, 생명산업과), 주민생활지원국(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가족여성과, 스포츠마케팅과, 지구환경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산업지원사업소, 클린사업소, 농업기술센터,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개정 2009.3.27〉

다. 구청(주민생활지원과, 산업위생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

4. 도시건설위원회

가. 주민생활지원국(푸른녹지과, 시민공원과), 도시교통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상하수도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개정 2009.03.27〉

다. 구청(도시주택과, 건설교통과) 소관에 속한 사항 <개정 2009.03.27>

제4조(상임위원회의 위원) ① 의원은 하나의 상임 위원회위원(이하 "상임위원"이라 한다)이 된다. 다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은 겸임할 수 있다 <개정2008.04.11>

②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제5조(상임위원의 임기) ① 상임위원은 선임된 날로부터 2년간 재임한다. 다만, 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가 폐회기간 중에 만료된 때에는 다음 회기에서 위원을 새로 선임한 전일까지 재임한다.

② 보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6조(상임위원장) ① 상임위원회에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이라 한다) 1인을 둔다.

②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한다.

③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

④ 상임위원장은 본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제7조(특별위원회) ① 의회는 수개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본회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의회는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둔다.

③ 삭제 <2006.9.28>

④ 의회는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와 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신설 2000.12.01, 개정 2006.9.28>

⑤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회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00.12.01>

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때는 그 활동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1995.10.30,개정 2000.12.01>

⑦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1995.10.31,개정 2000.12.01>

제8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①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 한다.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 까지는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선임) ① 상임위원의 선임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임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제11조(간사) ①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간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제12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안전심사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폐회 중에도 활동 할 수 있으며, 그 구성인원과 활동범위는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신설 1995.01.17 조례 제0577호>

③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심사경과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제13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외의 위원회의 회의의 운영, 의사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06.9.28>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5.01.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5.07.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 조례 시행후 최초로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로 구성되는 지방의회 상임위원의 임기에 관한 특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실시되는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로 구성되는 지방의회 상임위원의 임기는 제5조 규정에 불구하고 1년6월로 한다.

부 칙(1995.10.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6.12.06)

①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이 조례 시행으로 인한 최초의 보사·환경위원회의 위원은 조례시행전의 보사·경제위원회 위원으로 하고, 최초의 보사·환경위원회의 위원장 및 간사는 조례 시행전의 보사·경제위원회 위원장, 간사 각각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부 칙(1998.06.29)

이 조례는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10.12)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당시 의회·총무위원회, 보사·환경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장·간사는 각각 이 조례에 의한 의회·행정위원회, 경제·사회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장·간사로 선임 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위원 및 위원장·간사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부 칙(2000.04.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12.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11.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10.31)

이 조례는 200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06.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01.12)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10.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05.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03.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9.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01.0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사3동 관련사항은 2007년 2월 22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생 략

부 칙(2008.04.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 의회운영위원회의 직무는 의회운영위원회가 구성될 때 까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담당한다.

부 칙(2009.03.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